

무배당  
GOLDEN TIME  
연금보험 II

은퇴준비형 상품



# 여유롭고 풍요로운 인생의 골든 타임! 무배당 GOLDEN TIME 연금보험II

확정금리를 적용한 안정적인 은퇴 자산 확보는 물론 계약일로부터 1개월 후  
매월 생활자금 수령도 가능해 자산은 안전하게 지키고 생활은 여유롭게 누리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생활자금은 1형(생활자금형, 10년 이율확정형)가입 시 지급)

## 상품특징

### 가입시점 금리로 10년간 (1형 및 2형) 확정 지급

10년간 금리변동 없이 확정된 수익으로 안정적인 생활자금 및 연금 확보

### 미국 달러로 가입할 수 있는 연금보험

가입은 물론 연금 및 해지환급금도 달러로 수령

### 생활자금 수령 / 미수령 선택 가능(1형 생활자금형 선택 시)

가입 1개월 후 매월 생활자금 수령 시 최대 120회 생활자금 지급

미수령된 생활자금 누적액은 수령 재개 시 일시 지급 (본 안내장의 생활자금 활용예시 참조)

###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 가능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생활자금 활용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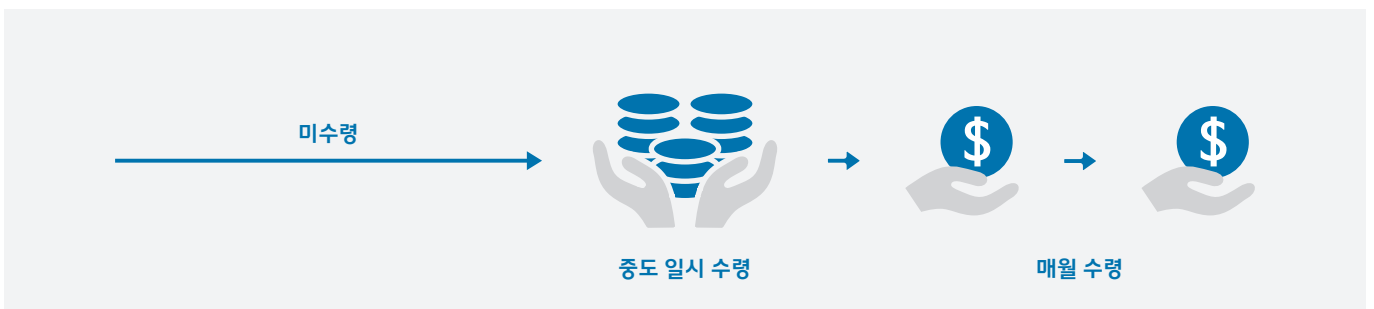
**매월 수령** 생활비, 교육비, 정기적 지출비용(결제대금, 적립식 금융상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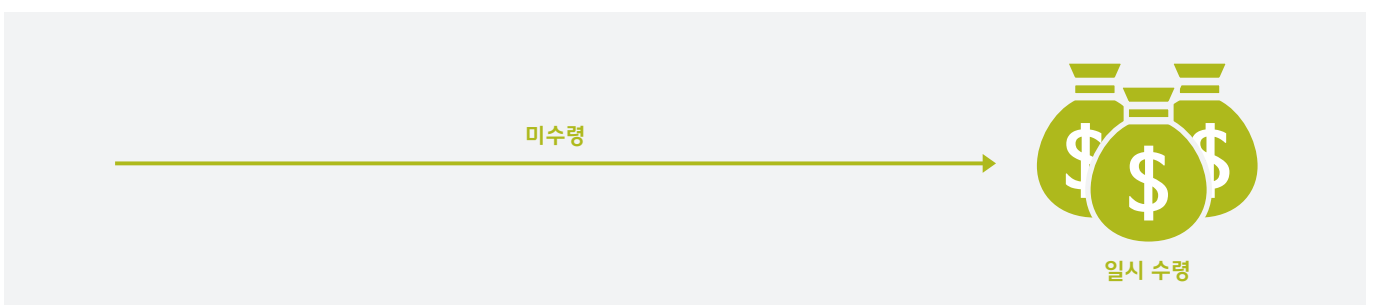
**중도 일시 수령** 자녀 결혼자금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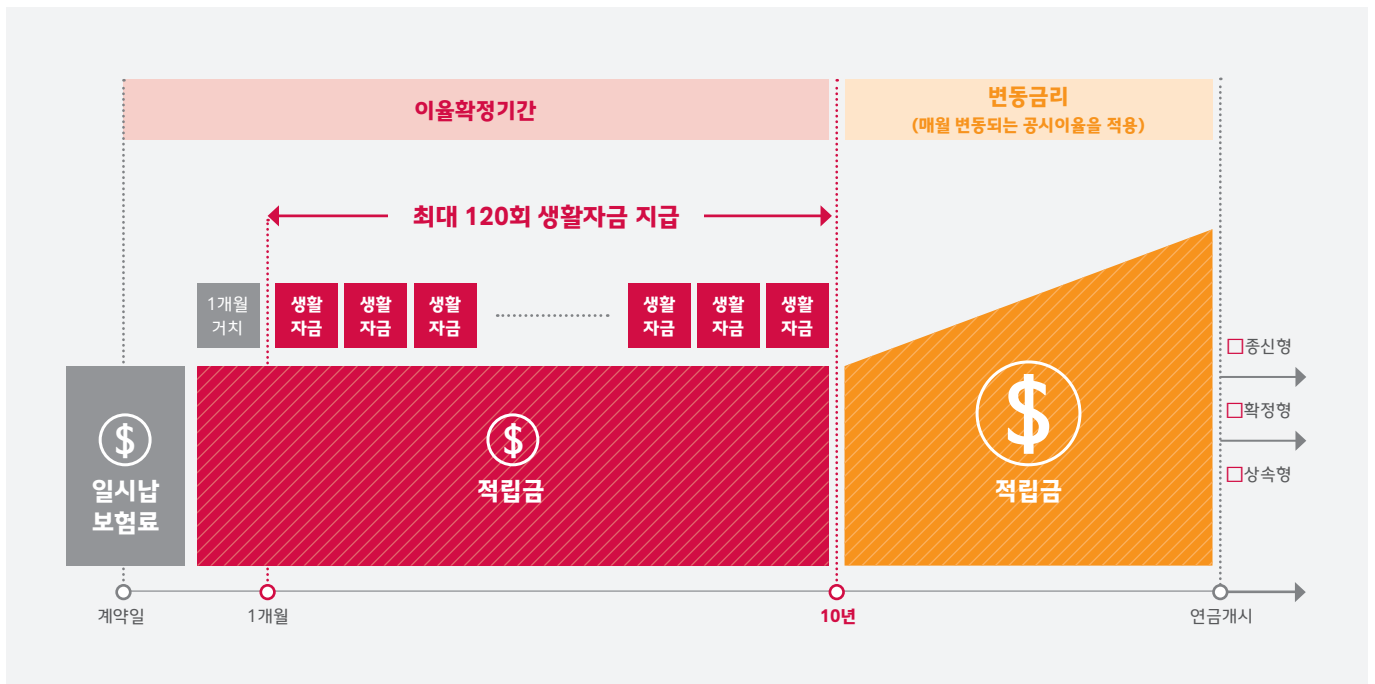
**중도 일시 수령 + 매월 수령** 등록금 + 생활비



**일시 수령**



# 무배당 GOLDEN TIME 연금보험 II 미국달러형 1형(생활자금형, 10년 이율확정형)



## 가입안내

**가입나이(A)**

만 15세 ~ 75세

**가입가능통화**

미국달러화(USD)

**생활자금 지급 개시시점**

계약일 이후 만 1개월(또는 만 13개월) 경과시점(보험계약해당일)

**연금개시나이**

"Max[(A+10)세, 45세] ~ 80세"

(다만, 가입나이가 71 ~ 75세인 경우 "(A+10)세 ~ 85세")

**보험료 납입주기**

일시납

**보험료 납입한도**

미국달러형 : 15,000달러 이상 ~ 3,000,000달러 이하

**이율확정기간**

계약일부터 10년

**적립이율**

이율확정기간 동안 가입시점의 공시이율을 확정 적용하고, 이율확정기간 종료 후에는 매월 변동되는 공시이율을 적용

**최저보증이율**

통화	10년 이내	10년 이후
미국달러형	연복리 1.0%	연복리 0.5%

- 이 상품의 위험보험료 적용이율은 연복리 2.25%입니다.
- 미국달러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 및 보험금 지급 통화는 미국달러(USD)로 합니다.
- 상품 가입 시에는 사업방법서 및 약관의 주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장내용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구분	지급사유	지급내용
고도장애장해보험금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일시납 보험료의 15%
생활자금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계약자가 선택한 생활자금 지급 기간("계약일 이후 만 1개월 경과시점부터 만 120개월 경과 시점까지" 또는 "계약일 이후 만 13개월 경과 시점부터 만 120개월 경과시점까지") 동안 매월 보험 계약 해당일에 보험 계약이 유효한 경우(1형(생활자금형, 10년 이율확정형)에 한함)	이율확정기간 종료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이 일시납 보험료가 되도록 매월 계산한 생활자금 해당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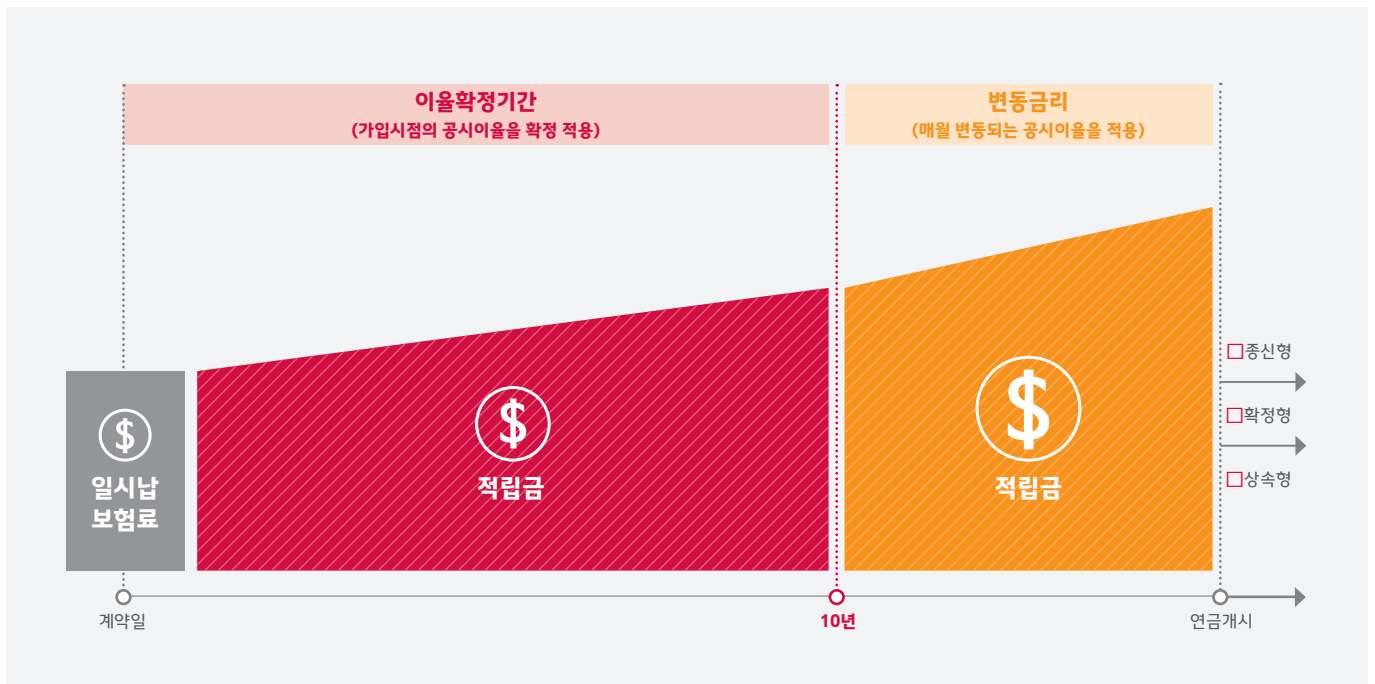
-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연금계약 적립액과 일시납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연금계약 적립액이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연금계약 순보험료(영업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 계약체결 및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를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절한 금액에서 매월 보험계약해당일에 위험보험료 및 납입 후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 장해분류표 및 장해지급률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구분	지급사유	지급내용
종신 연금형	보증 기간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 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을 기준으로 예정 개인연금 생존·사망률을 사용하여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10차년도 또는 20차 년도까지 보증지급) <연금지급형태> 정액형/5%, 10% 체증형(체증기간 10년)
	보증 금액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을 기준으로 예정 개인연금 생존·사망률을 사용하여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다만,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사망 시 이미 지급된 연금총액이 연금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확정연금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연금지급기간 (10년, 15년, 20년)의 매년 보험계약해당일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을 기준으로 확정된 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동안 분할하여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상속연금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다만, 피보험자 사망 시에는 사망시점의 책임준비금을 지급)

- 연금계약 적립액이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연금계약 순보험료(영업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 계약체결 및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를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절한 금액에서 매월 보험계약 해당일에 위험보험료 및 납입 후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 연금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도 변경됩니다.
-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전 연금생명표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생명표 및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하며, 이 경우 회사는 연금개시 3개월 전까지 연금액 변동내역 및 연금지급형태 선택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전 연금생명표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 또는 연금월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생명표 및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 또는 연금월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종신연금형(보증기간부) 체증형의 경우, 체증기간 10년간의 연금액은 직전년도 연금액에 체증률 5% 또는 10%로 체증한 금액을 지급하며, 체증기간 10년이 경과한 이후(11차년도 이후)의 연금액은 체증기간 최종년도(10차년도)에 지급된 연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연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연금을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종신연금형(보증기간부)의 경우, 연금 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중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10년 또는 20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연액을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방법"과 "연금지급주기(매월, 매3개월, 매6개월, 매년)에 따라 지급받는 방법" 중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지급합니다.
-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 지급개시 후 확정연금 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중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10년, 15년 또는 20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연액을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방법"과 "연금지급주기(매월, 매3개월, 매6개월, 매년)에 따라 지급받는 방법" 중 계약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지급합니다.
- 상속연금형의 경우, 연금 지급 개시 후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 종신연금형(보증기간부)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까지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 1형(생활자금형, 10년 이율확정형)의 경우, 계약자가 미지급된 생활자금의 수령 방법을 연금지급 개시일 전일까지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지급된 생활자금을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에 더하여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연금액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무배당 GOLDEN TIME 연금보험 II 2형(거치형, 10년 이율확정형)



## 가입안내

**가입나이(A)** 만 15세 ~ 75세  
**가입가능통화** 미국달러화(USD)  
**연금개시나이** "Max[(A+10)세, 45세] ~ 80세"  
 (다만, 가입나이가 71 ~ 75세인 경우 "(A+10)세 ~ 85세")  
**보험료 납입주기** 일시납  
**보험료 납입한도** 미국달러형 : 15,000달러 이상 ~ 3,000,000달러 이하

**이율확정기간** 계약일부터 10년  
**적립이율** 이율확정기간 동안 가입시점의 공시이율을 확정 적용하고, 이율확정기간 종료 후에는 매월 변동되는 공시이율을 적용  
**최저보증이율**

통화	10년 이내	10년 이후
미국달러형	연복리 1.0%	연복리 0.5%

- 이 상품의 위험보험료 적용이율은 연복리 2.25%입니다.
- 미국달러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 및 보험금 지급 통화는 미국달러(USD)로 합니다.
- 상품 가입 시에는 사업방법서 및 약관의 주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장내용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구분	지급사유	지급내용
고도재해장해보험금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애분류표'에서 정한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여러 신체부위의 장애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애상태가 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일시납 보험료의 15%

-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연금계약 적립액과 일시납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연금계약 적립액이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연금계약 순보험료(영업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 계약체결 및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를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절한 금액에서 매월 보험계약해당일에 위험보험료 및 납입 후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 장애분류표 및 장애지급률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구분	지급사유	지급내용
종신 연금형	보증 기간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을 기준으로 예정 개인연금 생존·사망률을 사용하여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10차년도 또는 20차년도까지 보증지급) <연금지급형태> 정액형/5%, 10% 체증형(체증기간 10년)
	보증 금액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을 기준으로 예정 개인연금 생존·사망률을 사용하여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다만,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사망 시 이미 지급된 연금총액이 연금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확정연금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의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을 기준으로 확정된 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동안 분할하여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상속연금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다만, 피보험자 사망 시에는 사망시점의 책임준비금을 지급)

- 연금계약 적립액이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연금계약 순보험료(영업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 계약체결 및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를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절한 금액에서 매월 보험계약 해당일에 위험보험료 및 납입 후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 연금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도 변경됩니다.
-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전 연금생명표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생명표 및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하며, 이 경우 회사는 연금개시 3개월 전까지 연금액 변동내역 및 연금지급형태 선택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전 연금생명표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 또는 연금월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생명표 및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 또는 연금월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종신연금형(보증기간부) 체증형의 경우, 체증기간 10년간의 연금액은 직전년도 연금액에 체증률 5% 또는 10%로 체증한 금액을 지급하며, 체증기간 10년이 경과한 이후(11차년도 이후)의 연금액은 체증기간 최종년도(10차년도)에 지급된 연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연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연금을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시이율로 계산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종신연금형(보증기간부)의 경우, 연금 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중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10년 또는 20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연액을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방법"과 "연금지급주기(매월, 매3개월, 매6개월, 매년)에 따라 지급받는 방법" 중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지급합니다.
-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 지급개시 후 확정연금 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중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10년, 15년 또는 20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연액을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방법"과 "연금지급주기(매월, 매3개월, 매6개월, 매년)에 따라 지급받는 방법" 중 계약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지급합니다.
- 상속연금형의 경우, 연금 지급 개시 후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 종신연금형(보증기간부)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까지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 1형(생활자금형, 10년 이율확정형)의 경우, 계약자가 미지급된 생활자금의 수령 방법을 연금지급 개시일 전일까지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지급된 생활자금을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에 더하여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연금액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해지환급금 예시

### 1형[생활자금형, 10년 이율확정형] 생활자금 120회 지급

**미국달러형**

기준 : 일시납보험료 10만달러, 40세 여자, 50세 연금개시, 가입시점의 공시이율 연1.55%(2020년 12월 1일 기준) 가정시 /단위 : USD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1)최고MVA값(20%) 가정시		(2)공시이율 1.5% 상승 가정시		(3)가입시점의 공시이율 적용시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100,000	78,625.35	78.6%	82,459.56	82.5%	94,031.83	94.0%
3년	100,000	78,763.19	78.8%	85,889.90	85.9%	95,126.55	95.1%
5년	100,000	79,103.08	79.1%	89,691.76	89.7%	96,480.16	96.5%
7년	100,000	79,453.60	79.5%	93,672.70	93.7%	97,864.31	97.9%
10년	100,000	100,000.00	100.0%	100,000.00	100.0%	100,000.00	100.0%

### 2형[거치형, 10년 이율확정형]

**미국달러형**

기준 : 일시납보험료 10만달러, 40세 여자, 50세 연금개시, 가입시점의 공시이율 연1.55%(2020년 12월 1일 기준) 가정시 /단위 : USD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1)최고MVA값(20%) 가정시		(2)공시이율 1.5% 상승 가정시		(3)가입시점의 공시이율 적용시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100,000	79,387.03	79.4%	83,258.39	83.3%	94,942.76	94.9%
3년	100,000	81,083.83	81.1%	88,420.52	88.4%	97,929.32	97.9%
5년	100,000	83,031.39	83.0%	94,145.91	94.1%	101,271.43	101.3%
7년	100,000	85,039.79	85.0%	100,258.61	100.3%	104,744.92	104.7%
10년	100,000	110,213.31	110.2%	110,213.31	110.2%	110,213.31	110.2%

-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 예시표의 (1)은 최고 MVA값 20%를 적용하였을 경우의 금액으로 해지시점의 공시이율이 아무리 상승하여도 최저로 보증해드리는 해지환급금입니다.
-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 예시표의 (2)는 해지시점의 공시이율이 가입시점의 공시이율보다 1.5%p 상승하였다고 가정할 경우의 해지환급금 예시 금액입니다. 이율확정기간 중 계약 해지 시 해지시점의 공시이율이 가입시점의 공시이율보다 상승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가입시점의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보다 감소합니다.
-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 예시표의 (3)은 가입시점의 공시이율과 해지시점의 공시이율이 같다는 가정하에 계산된 MVA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 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이 상품의 이율확정기간은 1형(생활자금형, 10년 이율확정형) 및 2형(거치형, 10년 이율확정형)의 경우 계약일부터 10년으로 합니다.
- 이율확정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변동합니다.
- 기준일은 2020년 12월 1일 기준(미국 달러형 1형 및 2형의 경우 연1.55%)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며, 이율확정기간 중 공시이율은 매월 1일과 16일에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합니다.
- 경과기간 10년의 해지환급금은 이율확정기간(1형 및 2형의 경우 10년) 종료 후 금액으로 MVA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율확정기간 중 해지시에는 MVA가 적용됩니다.
- 상기 예시된 금액은 세전 금액을 의미합니다.

### 시장가격조정률(MVA)

- 본 상품은 이율확정기간 중 해지 시 시장가격조정률(MVA)을 적용합니다.
- 이율확정기간 중 해지 시 연금계약 적립액에(1-MVA)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 환급금으로 합니다. (다만 해지시점까지 발생한 생활자금에 대해서는 시장가격조정률(MVA)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해지환급금 = 해지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X(1-MVA)
- $MVA = 1 - [(1+A)/(1+B+0.5\%)]^{N/12}$
- A : 가입시점의 공시이율 B : 해지시점의 공시이율
- N : 이율확정기간 중 잔여기간의 월수 (MVA : Market Value Adjustment)
- 해지환급금은 MVA(시장가격조정률)이 20% 이상인 경우 20%를 최고 한도로 적용합니다.



## 가입 시 알아두실 사항

### • 계약 시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께서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충당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 청약철회 청구제도를 이용하여 계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청약의 한 날부터 30일(다만,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합니다) 이내에 청약의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의 철회할 수 없습니다.

### • 모집중사자가 계약에 관한 중요 내용의 설명 등을 잘 이행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 그리고 피보험자는 보험회사 및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 대리, 중개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모집중사자가 AIA생명의 전속 설계사인 경우 해당 모집중사자는 'AIA생명'과 전속 계약을 체결한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이며, 모집중사자가 AIA생명의 전속 설계사가 아닌 경우 해당 모집중사자는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입니다. 계약 청약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 시장가격조정률(MVA)에 관한 사항

본 상품은 이율확정기간 중 해당 시 MVA(시장가격조정률)를 적용합니다. 해지환급금은 MVA(시장가격조정률)이 20% 이상인 경우 20%를 최고 한도로 적용하며 최고 해지환급금은 제한이 없습니다. 이율확정기간 중 해지 시는 연금계약 적립액에 (1-MVA)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합니다.

### •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생명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시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당사 고객센터로 1차 신청하시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치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 개인정보보호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AIA생명 고객센터 1588-9898

금융감독원 콜센터 : 1332(이동전화·지역번호-1332)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안내 부산 : (051)606-1702 / 대구 : (053)760-4000 / 광주 : (062)606-1600 / 대전 : (042)479-5151  
금융감독원 보험법률지원센터 안내 전화 : 1588-3311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내 인터넷 보험 범죄 신고  
생명보험협회 서울본사 : (02)2262-6600 / 서울 : (02)2262-6552 / 부산 : (051)638-7801~4 / 대구 : (053)427-8051 / 광주 : (062)350-0111~4 / 대전 : (042)242-7002 / 원주 : (033)761-9672

AIA생명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2길 16 AIA TOWER | 고객센터 1588-9898 / MKT-B231-2021-6 / COM-2021-08-34383(2021.08.27~2022.08.26) | 제작일자 : 2021.09

### • 보험료 산출기초에 관한 안내

이 보험상품의 위험보험료 적용이율은 연복리 2.25%이며, 위험보험료 적용이율은 계약자 적립금 및 해지환급금을 보증하는 이율은 아닙니다.

### • 배당에 관한 안내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금이 없습니다.

### •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세제혜택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만기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보험회사가 법에서 정한 판매원칙을 위반한 경우 계약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의 해지권)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적절한 해지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자에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자는 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 해당상품 미국달러형으로 가입하시는 경우, 해당 통화로 가입 및 지급되므로 환율 변동에 따른 차익 및 손실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 고의로 인한 사고 등 약관 상 일반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사항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 •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외 피보험자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본 자료는 약관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상품은 보장기능이 있고 납입보험료에 보험회사가 경비로 사용하는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예금, 적금 등과 다른 상품입니다.

### •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 : www.aia.co.kr

### • 보험상품 비교 공시 : www.klia.or.kr